

반부패 준법규정

제 1 장 총 칙

1. 목적

- 1.1 본 규정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영역에서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패 및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2.1 회사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엔무브, SK인천석유화학,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어스온 및 그들의 국내외 자회사를 의미한다.

2.2 회사 임직원

회사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정규사원, 임시사원, 파견사원, 예비사원 등)를 의미한다.

2.3 이해관계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및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거래상대방, 공직자등을 포함한다.

2.4 거래상대방

회사에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회사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자연인 또는 법인(사업파트너, 협력회사, 에이전트, 컨설턴트, 대리인, 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 등) 및 그 법인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2.5 공직자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국내외 공직자(공적 국가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및 그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2.6 금품등

금전(현금), 유가증권,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의미한다.

2.7 급행료

일상적, 반복적인 공직자등의 업무에 대해서 해당 업무의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등을 의미한다.

3. 적용범위

3.1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의 모든 거래상대방(사업파트너, 에이전트, 컨설턴트, 대리인, 투자회사, 합작투자회사 등)과의 거래관계에 적용된다.

3.2 회사는 각 국가별 현지 법률 및 실정에 따라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반부패 준법 업무절차

4. 임직원의 의무

4.1 회사 임직원은 본 규정 및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4.1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국내법규: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률' 등
- 해외법규: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영국의 뇌물수수방지법(UK Bribery Act) 및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업무수행 지역을 관할하는 국외 법규 등

4.2 회사 임직원은 본 규정과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가장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3 회사 임직원은 본 규정 및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품등의 수수(授受)*

*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모두 칭함

5. 금품등의 수수 금지

5.1 회사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또는 사업상 이익을 취득,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제안·약속 또는 허락을 하지 않아야 한다.

5.2 상기 5.1에 대한 세부지침은 『금품등의 수수 업무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6. 급행료

6.1 회사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기부금 및 후원금

7. 기부금 및 후원금

7.1 회사의 기부 및 후원 행위는 관련 법규 및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규정·전결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7.2 회사는 정치적 목적의 기부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7.3 상기 7.1 및 7.2에 대한 세부 지침은 『기부금/후원금 업무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장 거래상대방에 대한 반부패 위험평가

8. 거래상대방에 대한 반부패 위험평가

8.1 회사는 거래상대방이 회사와의 계약 체결 및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국내·외 반부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2 회사 임직원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반부패 위험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래상대방 반부패 실사 업무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8.3 회사 임직원은 거래상대방이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국내·외 반부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9.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9.1 회사는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9.2 회사 임직원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9.3 상기 9.1 및 9.2에 대한 세부 지침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장 기록유지 및 관리

10. 기록유지 및 관리

10.1 회사는 반부패 위험이 있는 부적절한 금품등의 지급 예방 및 사후 관리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모든 재무 거래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0.2 회사 임직원은 회사의 비용을 지급한 모든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등)에 의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제 8 장 교육 및 점검

11. 반부패 준법 교육

11.1 회사는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부패 준법 교육을 실시하며, 반부패 준법 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2 회사 임직원은 상기 11.1의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12. 점검 및 모니터링

12.1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회사 임직원들이 부패 방지 관련 법률 및 본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2 상기 12.1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은 회사 컴플라이언스 업무규정 제4장(위험진단과 대응)을 준용한다.

제 9 장 위반사항 제보 및 내부제보자 보호

13. 위반사항의 제보

13.1 회사 임직원은 본 규정 및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의 위반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윤리경영 조직에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야 한다.

13.2 전항의 제보는 아래 채널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보처리에 대한 운영기준과 절차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상담 및 제보 업무절차』 및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SK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 (https://ethics.sk.co.kr/advice/report_kor.asp2)
-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내 Compliance 제보 채널
([Compliance Platform \(skinnovation.com\)](https://skinnovation.com))

- 이메일 : ethics.skinnovation@sk.com, skicompliance@sk.com
- 전화 : 080-020-6262
- 팩스 : 080-020-6272

14. 내부제보자 보호

- 14.1** 회사는 본 규정 및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의 위반사실 또는 의심, 우려 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사실을 이유로 해당 임직원과의 고용관계를 비롯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 14.2**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침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상담 및 제보 업무절차』 및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절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15. 포상

- 15.1** 회사는 본 규정 및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반부패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16. 징계

- 16.1** 회사는 본 규정 및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16.2** 회사 임직원이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로 벌금 등을 부과 받은 경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액 기타 손해를 보전·상환 받을 수 없다.